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등록대상재산에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 추가〉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408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조문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3. 27.
3. 회부연월일 : 2025. 3.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도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재산 축소 신고나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해,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상법」 제170조는 회사 종류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5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유한책임회사는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유한책임회사 형태가 도입된 지 12년이 지났는데, 공직자 등록대상 재산이 아닙니다. 최근 대형 로펌들이 기존 합명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입법 공백을 해소해야 합니다. 재산 은폐 등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이에, 재산신고 대상에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을 포함시켜 제도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합니다. 제도 실효성 및 투명성 제고로 정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현행법상 재산등록의무자인 공직자가 등록하여야 할 재산에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을 추가하려는 내용임(안 제4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

현행	개정안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생략)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현행과 같음)
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u>	4. ----- <u>합자회사·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u> ----
5.·6. (생략)	5.·6.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價額)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③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u>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u> 은 출자가액과 지분비율 및 최근 사업연도의 회사연간매출액	8. ----- <u>합자회사·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u> ----- ----- -----
9. ~ 15. (생략)	9. ~ 15.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현행법은 재산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 중 하나로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을,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경우 출자지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가액은 주식의 경우 재산 등록기준일의 최종거래 가격 등으로 산정하고,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 출자지분의 경우 출자가액과 지분비율 및 최근 사업연도의 회사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¹⁾.

1)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생략)

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2.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3. 다음 각 목의 동산·증권·채권·채무 및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 가.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를 포함한다)
 - 나.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예금
 - 다.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 라.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권
 - 마.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무
 - 바.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
 - 사.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 아.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골동품 및 예술품
 - 자.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 차.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카.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4.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5. 주식매수선택권
 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價額)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 1.~6. (생략)
 7. 주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상장된 주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거래가 재산등록 기준일 전에 마감된 경우에는 마감일의 최종거래가격.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을 말한다), 그 외의 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또는 실거래가격
 8.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출자가액과 지분비율 및 최근 사업연도의 회사 연간매출액

개정안은 등록대상재산에 유한책임회사²⁾의 출자지분을 추가하고, 가액 산정 방식은 출자가액과 지분비율 및 최근 사업연도의 회사 연간매출액으로 하려는 것임.

「상법」상 회사의 종류³⁾ 중 유한책임회사를 제외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의 출자지분과 주식회사의 주식은 현행법상 재산등록시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만 등록대상재산에서 제외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비교 >

구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구성	주주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사원 책임범위	간접, 유한책임	간접, 유한책임	간접, 유한책임
정관변경 결의 요건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변경 가능 (주주의결권의 2/3 이상 +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변경 가능 (총사원의 1/2 이상 + 총사원 의결권의 3/4 이상)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총사원의 동의로 변경 가능
업무집행기관	이사회, 대표이사	이사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자
필요기관	주주총회, 이사	사원총회, 이사	없음

9.~15. (생략)

④~⑦ (생략)

2) 유한책임회사는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의 형태로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각 사원이 출자가액과 상관없이 동일한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사원 개개인의 사적 자치를 존중하는 조합의 성격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특징임.

3) 「상법」

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재무제표 작성의무	있음	있음	없음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있음	없음	없음
회사채 발행	가능	불가	불가
외부감사	받음	일정요건 충족시 받음	받지 않음

자료: “정책적 관점에서 살펴본 신외감법의 도입과 유한책임회사”(「회계세무와 감사연구(2022년12월)」, 한국공인회계사회)

인사혁신처는 2011년 개정된 「상법」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합명·합자·유한회사 뿐만 아니라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도 재산등록항목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법원행정처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을 재산등록 대상으로 포함시켜 입법공백 및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에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42